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
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법률 개정('25.4)으로 농지 전용 농지더라도, '공익 사업 편입 농지 중 토지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'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

이에, 지급 요건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신설 조항의 '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여부' 판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농식품부장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(안 제63조제2항제2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제2호 중 “같은 항 제6호”를 “같은 항 제2호와 제6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	제6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<u>같은 항 제6호에</u>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	2. ----- 같 은 항 제2호와 제6호에 ----- ----- -----
3.~12. (생략)	3.~1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75